

## 2022년 생활체육팀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

가평군시설관리공단에서 함께 근무할 참신하고 의욕적인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합니다.

2022년 12월 09일

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

### 1. 채용분야 및 인원, 근무조건

| 분 야 | 근무장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인 원 | 채용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근무시간                    | 근로시간             | 급여현황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|
| 1   | 한석봉체육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명  | 2023.1.1.<br>~<br>2023.06.30.<br>(6개월)  | 월 ~ 금<br>(09:00 ~18:00) | 일 8시간/<br>주 40시간 | - 일급(8시간)<br>: 83,760원<br><br>※ 2023년 가평군<br>생활임금 적용 |
| 2   | 한석봉체육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명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|
| 3   | 생활체육팀<br>수탁 시설<br>(체육시설<br>수시 배치) | 4명  | 2023.1.1.<br>~<br>2023.12.31.<br>(12개월)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|

※ 사업장 사정에 따른 근무일, 휴일 및 근무시간은 변경(조정)될 수 있음

※ 휴일 행사대관에 따른 환경정비 근무 시 휴일수당 지급

#### □ 주요직무

- 1분야: 한석봉체육관 수영장 안전요원 및 강습보조, 환경정비 등
- 2분야: 한석봉체육관 헬스장 환경정비 및 회원관리(고객응대) 등
- 3분야: 한석봉체육관 및 생활체육파트 시설·환경 정비 등

□ 임금지급: 월급(월 1회, 익월 10일 이내 지급)

□ 기타사항: 4대 보험 가입,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수당 및 휴가 부여

## 2. 채용 응시자격

### □ 응시 자격기준

| 분 야  | 자 격 사 항   |
|------|---|
| 분야 1 | <p>다음 자격 중 하나를 소지한 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만 60세 이하</li> <li>-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(2급 이상) 또는 대한적십자사 및 국민안전처(해양경찰청장) 장관이 지정한 인명구조요원 교육 및 검정기관에서 발급된 자격증 소지자</li> </ul> |
| 분야 2 | <p>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만 60세 이하</li> <li>- 공고일 1일전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가평군 관내로 되어 있는 사람</li> </ul>   |
| 분야 3 | <p>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만 60세 이상 ~ 만 70세 미만(시니어인턴십)</li> <li>- 공고일 1일전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가평군 관내로 되어 있는 사람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 □ 결격 사유

| ○ 공단 기간제근로자 관리운영 시행내규 제11조(기간제 근로자의 자격)   |
|---|
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심판을 받은 사람</li> <li>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</li> <li>3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</li> <li>4.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</li> <li>5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</li> <li>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<sup>6의2</sup>. 공단직원으로 재직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sup>6의3</sup>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sup>6의4</sup>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</li> <li>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</li> </ul> </li> <li>6의5. 징계에 의하여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,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/li> <li>7.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</li> </ol> |

## □ 우대 사항

| 자격 사항  |
|--|
| 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,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, 「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고엽제후유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취업지원 및 보호 대상자<br>2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<br>3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및 배우자 또는 자녀 중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<br>4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<br>5.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북한이탈주민<br>6.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따른 장애인<br>7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<br>8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|

※ 면접시험의 합격기준에 미달될 경우 가산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

※ 2가지 이상의 가산대상에 해당될 경우 그중 유리한 가산점수 1가지만 적용됩니다.

※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

## □ 우대사항 제출서류(해당자에 한하여 면접 일 제출 필)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| 제 출 서 류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취업지원대상자                    |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(원본제출, 보훈관청 발급)   |
| 장애인                        |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명서(원본제출, 시/군/구 민원실 또는 주민센터 발급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북한이탈주민                     | 북한이탈주민확인서(원본제출, 통일부 또는 시/군/구 민원실 발급)   |
| 다문화가족                      | 주민등록등본,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 중 한 가지<br>(다문화가족 구성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, 원본 제출) |
| 의상자 및<br>의사·상자<br>배우자 및 자녀 | 본인- 의상자증명서, 배우자 및 자녀 - 의사·상자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<br>(원본 제출, 시/군/구 민원실 발급)           |
| 국민기초생활수<br>급자              |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<br>(원본제출, 온라인 정부24, 오프라인 시/군/구 민원실 발급)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차상위 계층                     | 차상위계층 확인서(원본제출, 온라인 복지포, 오프라인 시/군/구 민원실 발급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 3. 채용일정

| 일자 (기간)              | 추진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채용계획 결제 후            | -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3조의4에 의한 채용계획 사전 협의 | 가평군청                      |
| 2022.12.9.           | -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                 | 공단 홈페이지, 클린아이 등           |
| 2022.12.12. ~ 12.19. | - 기간제 근로자 원서 접수                  | 방문접수<br>(한석봉체육관 1층 생활체육팀) |
| 2022.12.20           | - 서류전형 적격심사: 14:00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- 서류전형 결과발표 / 면접시험 대상자 및 장소 공고   | 공단 홈페이지, 클린아이 등           |
| 2022.12.22.          | - 면접심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한석봉체육관 지하1층               |
| 2022.12.23.          | - 합격자 발표                         | 공단 홈페이지, 클린아이 등           |

※ 추진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### 4.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

#### □ 원서 접수

- 접수기간: 2022. 12. 12.(월). ~ 12. 19.(월) / 09:00~18:00(점심시간, 휴일 제외)
- 접수방법: 방문 접수
- 접수처: 한석봉체육관 1층 사무실(가평읍 문화로 153번지) / 생활체육팀  
 ※ 접수마감일(2022.12.19. 18:00)까지 접수된 응시자에 한함

#### ○ 제출서류

| 구분                | 제출서류   |
|-------------------|--|
| 원서접수 기간 내<br>제출서류 | 1. 응시원서<br>2. 직원 채용시험 입사지원서<br>3. 직원 채용시험 자기소개서<br>4. 개인정보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1부<br>5. 주민등록등본 1부(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) [분야 2,3] |
| 면접(당일) 시 구비 서류    | 1. 기타 응시자격 증빙자료  |

※ 구비서류는 반드시 [공단 소정\(채용공고\) 양식을 다운로드](#)하여 작성

↳ 공단 홈페이지([www.gpfmc.or.kr](http://www.gpfmc.or.kr)) → 알림방 → 채용공고 → 서식 다운로드

## 5. 채용절차 및 방법

### □ 채용절차

- 1) 1차 서류심사: 응시 자격 기준 부합 여부 심사(적격 여부)
- 2) 2차 면접심사: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
- 3) 면접심사 평가항목: 50점 / 각 항목 당 10점 만점
  - 심사항목: 고객지향 및 공익추구 자세, 창의성, 예의품행 및 성실성,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, 직무 전문성
  - 합격기준: 각 위원이 평가한 점수의 평균이 보통(30점) 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항목에 대하여 미흡(4점) 이하로 평가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.

※ 주의사항: 블라인드 면접으로 응시자의 개인 신상 발언 금지(친·인척 중 유명인사 또는 고위직, 본인에게 유리한 성장배경, 가족관계, 학력, 사회경력 등 의도적 전달 행위)

### □ 최종 합격자 결정: 면접 100%(면접시험 결과 고득점자)

### □ 합격자 발표: 공단 홈페이지([www.gpfmc.or.kr](http://www.gpfmc.or.kr))채용 공고 발표

### □ 예비 합격자 제도 운영 (공단 인사규정시행내규 제1조의 2)

- 인원규모: 예정인원의 2배수(최대 12명)
- 적용기간: 해당 채용기간 내

[분야 1,2] (~2023. 06. 30.) / [분야3] (~2023. 12. 31.)

※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10조의2 1항에 해당하는 결원 발생 시 공단 내·외부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장의 판단에 따라 예비합격자 제도에 의해 추가 채용 하거나 아니할 수 있음.

## 6. 고용의 해고

○ 최종 합격 후 근무태도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관리운영시행내규 제47조(고용의 해고)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용의 해고가 될 수 있음.

1.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한 자로서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고 개선의 정이 없다고 판단될 때
2. 출·퇴근 시간 및 근무태도의 불량 또는 기타 사유로 3회 이상 지적 당하거나 계속하여 3일 이상 무단결근 또는 1월 결근일수 합계가 7일 이상인 때

3. 고의 또는 과실로 공단의 시설물 또는 기구류를 파괴하거나 사업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
4. 고의 또는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켜 공단의 운영에 손해를 끼친 때
5. 경력을 낮게 또는 높게 사칭하여 입사하거나 직위(급)을 사칭한 때
6. 사회통념상 신체·정신상의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
7. 공금의 횡령·유용 또는 향응을 받거나 배임한 때(금액의 제한은 없음)
8. 협박 또는 폭행으로 상사 또는 동료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때
9. 허가 없이 공단 안에서 불온문서의 배부, 시위·집회 등에 참여한 때
10. 공단의 비밀을 누설하여 손해를 끼친 때
11.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휴직기간 1년 이내에 직장 복귀를 할 수 없게 된 때
12.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개선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때
13. 근무지변경 등 업무명령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복종 한 때
14. 이사장의 승인 없이 타 사업장에서 일을 한 때
15. 형사상 유죄확정판결을 받았을 때
16. 정기 또는 임시 건강진단결과 취업의 부적격자로 판정된 때
17. 사업운영상 부득이 감원을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
18. 공단 취업규정 제11조를 위반 하였을 때
19.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

## 7. 기타 유의사항

- 인사청탁, 제출서류의 위변조, 허위사실기재 등 비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해당 응시자의 합격을 즉시 취소 후 적발된 날로부터 5년 간 공단 채용시험 응시가 제한됩니다.
- 제출된 서류의 기재·착오·누락 또는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며, 접수마감 후 제출서류는 일체 변경·추가보완 등이 불가합니다.
- 해당분야 적격자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결격사유조회 결과 등에 따라 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되고, 예비합격자 순번에 따라 추가합격 됩니다.
- 제출된 서류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채용서류의 반환을

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 후 반환합니다.(채용 여부가 확정 된 날 이후 90일까지 청구 기간이며 청구 시 14일 이내 반환됨. 비용발생 시 본인부담.)

- 불가피한 사유로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까지 변경된 사항을 공고합니다.
- 채용비리 방지를 위해 우리공단에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과 친인척(배우자, 4촌 이내 혈족·인척)인 합격인원은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개됩니다.
- 본 계획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상황 및 공단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확진자 및 자가 격리자는 시험응시가 불가하며 감염사실을 숨기고 응시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을 위해 발열 체크, 건강상태 확인, 손 소독,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하며, 면접시험 당일 발열, 기침 등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응시가 불가합니다.
- 본 공고사항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유권해석에 따릅니다.
- 기타문의: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생활체육팀 채용담당자(☎031-8078-8311)